



##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

다만, 시장, 부시장실 법령집 등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,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, 담당직제가 없는 부서에서는 서무담당자가 하여야 한다.

② 가제정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록상황 등을 기재하고, 정리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변상)** 법령집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점검)** 당해 직상급자는 제3조에 의한 추록가제정리 사항을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·2·26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·7·2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부칙 <2013·8·23 훈령 제213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1·1 훈령 제274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내지 ④ 생략

⑤ 「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」 제4조제1항 중 “자치행정과 시정담당”을 “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”으로 하고, “기획감사담당관은 법무통계담당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은 법무규제개혁담당”으로 한다.

⑥ 내지 ⑰ 생략

부칙 <2023·3·6 훈령 제315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「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」 제4조제1항 단서 중 “자치행정과 자치행

정담당”을 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”으로 하고, “법무규제개혁담당”을 “법무담당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24·7·1 훈령 제328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」 제4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”을 “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”으로 한다.

⑦ 부터 ⑨ 까지 생략